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42호 2021. 10. 15(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1-156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모노레일 및 쉼터 이어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961호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 남원시 공고 제2021-19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 13
- 남원시 공고 제2021-197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남원의료원 의료진숙소 증축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8
- 남원시 공고 제2021-1998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 남원시 공고 제2021-1992호 공시송달공고 ----- 33
- 남원시 공고 제2021-1993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35
- 남원시 공고 제2021-1997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공고문 - 50
- 남원시 공고 제2021-1999호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4
- 남원시 공고 제2021-2002호 남원시 이·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09
- 남원시 공고 제2021-2003호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1-156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인 『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10월 15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37-12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기정 9,946㎡ ⇒ **변경 8,56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대표 이용운
 - 나. 주 소
 - 기정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5, 6층(별양동)
 -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8-13(어현동)**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1. 09. 30.
 - **변경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2. 04. 30.**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 모노레일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503,190	8,972	-934	8,038						
1	노암동	1	전	813	5	-1	4	남원시					
2	노암동	2-3	전	821	4	-2	2	남원시					
3	노암동	3	전	8,666	65	-14	51	남원시					
4	노암동	10	답	11,356	1	-	1	남원시					
5	노암동	419	전	212	95	-73	22	남원시					
6	노암동	421-1	답	1,884	7	-2	5	남원시					
7	노암동	421-2	답	1,983	187	-58	129	남원시					
8	노암동	422-1	답	7,157	391	-32	359	이*선	하*동 1*2				
9	노암동	433	전	1,646	23	6	29	남원시					
10	노암동	438	전	793	4	53	57	남원시					
11	노암동	810-10	구	1,096	35	-6	29	국(건 설부)					
12	노암동	810-15	구	4,901	567	-65	502	국(건 설부)					
13	노암동	828	도	126	7	-5	2	국(건 설부)					
14	노암동	829	구	179	9	-6	3	국(농림 축산식 품부)					
15	노암동	산9-2	임	22,847	771	-123	648	남원시					
16	노암동	산10	임	21,093	119	-27	92	남원시					
17	노암동	산10-5	도	100	7	-1	6	남원시					
18	노암동	산10-7	임	10,317	445	44	489	남원시					
19	노암동	산10-8	임	2,437	41	-10	31	남원시					
20	노암동	산11	임	2,571	204	-37	167	남원시					
21	노암동	산11-1	임	2,691	115	-23	92	남원시					
22	노암동	산11-2	임	5,151	200	-62	138	남원시					
23	어현동	37-7	도	5,821	79	-79	-	남원시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어현동	37-12	원	17,017	1,321	125	1,446	남원시					
25	어현동	37-20	원	685	279	-79	203	남원시					
26	어현동	37-21	원	1,055	79	3	82	남원시					
27	어현동	37-74	원	3,054	141	-13	128	남원시					
28	어현동	37-79	원	1,881	267	-39	228	남원시					
29	어현동	37-99	원	267,512	16	55	71	남원시					
30	어현동	37-111	도	20,099	232	-154	78	남원시					
31	어현동	37-153	원	49	13	20	33	남원시					
32	어현동	37-158	원	8,169	541	-50	491	남원시					
33	어현동	37-176	원	220	3	-3	-	남원시					
34	어현동	37-177	원	132	3	-3	-	남원시					
35	어현동	37-178	원	63,622	1,626	-329	1,297	남원시					
36	어현동	37-187	원	836	95	-13	82	남원시					
37	어현동	37-190	원	283	18	-17	1	남원시					
38	어현동	산88-2	임	2,123	867	112	979	남원시					
39	어현동	산88-3	도	918	79	-27	52	남원시					
40	어현동	산88-5	도	874	11	-2	9	남원시					

○ 쟁의이어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9,063	974	-443	531						
1	노암동	1	전	813	465	-163	302	남원시					
2	노암동	422-1	답	7,157	102	-	102	이*선	하*동 1*2				
3	노암동	산10	임	21,093	407	-280	127	남원시					

남원시 공고 제2021-1961호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경미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송 대상 범위의 변경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4조)
- 나. 포상금 지급액 변경(안 제5조)
 - 1) 행정소송(본안)·민사소송(본안): 1명당(6만원 → 30만원 이내)
 - 2) 소액사건·신청사건: 1명당 (2만원 → 10만원 이내)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2. ~ 2021. 11. 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bsj0208@korea.kr),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63-620-6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경미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 대상 범위의 변경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4조)

나. 포상금 지급액 변경(안 제5조)

1) 행정소송(본안)·민사소송(본안): 1명당(6만원 → 30만원 이내)

2) 소액사건·신청사건: 1명당 (2만원 → 10만원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10. 12. ~ 2021. 11. 1.(20일간)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규제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으로, “수행에 있어서 두드러진”을 “수행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하며,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공무원”을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당 60,000원이내”를 “1명당 300,000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장</u>(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u>수행에 있어서 두드러진 공적이</u>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남원시 또는 남원시장</u>----- -----<u>수행에서</u>----- ----- ----- ----- -----.</p>
<p>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u>공무원</u>.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한한다</u>.</p>	<p>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 <u>각 호</u>----- ----- ----- <u>공무원으로 한다.</u> --- ----- ----- ----- -----<u>한정한다.</u></p>
<p>1. <u>시장</u>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u>70퍼센트 이상</u>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p>	<p>1. <u>남원시</u>(이하 “시”라 한다) 또는 <u>남원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u>70퍼센트 이상</u>-----</p>
<p>2. <u>시장</u>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u>70퍼센트 이상</u>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p>	<p>2. <u>시 또는 시장</u>----- ----- -----<u>70퍼센트 이상</u>----- -----</p>
<p>② 제1항 <u>각호</u>의 <u>1</u>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p>	<p>② ----<u>각 호</u>----- ----- -----</p>

현행	개정안
<p>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u>공무원</u></p>	<p>----- ----- <u>공무원에게 지</u> ----- <u>급한다.</u></p>
<p>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u>2인이</u> <u>상</u>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u>1인</u>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금을 고르게 분배한다.</p>	<p>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u>2명 이</u> <u>상</u>----- -----<u>1명</u>----- ----- -----.</p>
<p>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u>시장</u>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u>시</u> 또 <u>는 시장</u>----- -----<u>각 호</u>----- ----- -----.</p>
<p>② (생략) ③ 포상금은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u>각 호</u>----- ----- -----.</p>
<p>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u>각호</u>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 다.</p>	<p>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 -----<u>각 호</u>----- ----- -----.</p>
<p>1. 행정소송(본안) <u>1인당 60,000</u> <u>원</u>이내 2. 민사소송(본안) <u>1인당 60,000</u> <u>원</u>이내</p>	<p>1. ----- <u>1명당 300,00</u> <u>0원</u> 이내 2. <u>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u> <u>0원</u> 이내</p>

현 행	개 정 안
<p><u>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u></p> <p><u><신 설></u></p> <p>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u>20,000원 이내</u></p> <p>② (생략)</p>	<p>3. 「<u>소액사건심판법</u>」에 의한 <u>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u></p> <p>4. -----1명당 <u>100,000원 이내</u></p> <p>② (현행과 같음)</p>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1-19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10월 15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동충동	도로	소로	3-208	동충동 54-5 ~ 동충동 23-5	L=294m B=4~6m	2019. 12	남원시	면적 변경
				3-209	동충동 52-23 ~ 동충동 46-3		2021. 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제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5)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 토지조서

구 분		합 계	국, 공유지		사유지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필지수(개소)	40	36	36	4	4	
	면적(㎡)	1,403	1,289	1,388	15	15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동충	45-6	45-6	도	196	1		국(기획재정부)				
2	"	45-2	45-16	대	13	2		남원시				
3	"	45-5	45-17	대	146	1		남원시				
4	"	45-12	45-12	도	23	23		남원시				
5	"	45-10	45-20	대	142	30		남원시				
6	"	45-9	45-19	대	129	34		남원시				
7	"	45-8	45-21	대	119	1		남원시				
8	"	45-1	45-22	대	145	5	남원시 동충동	이*덕				
9	"	473	473	도	606	306		건설부				
10	"	474	474	도	221	65		기획재정부				
11	"	474-4	474-4	도	32	32		기획재정부				
12	"	40-2	40-5	대	172	133		남원시				
13	"	40-1	40-4	대	63	28		남원시				
14	"	472	472	구	468	52		국(농림축산식품부)				
15	"	23-19	23-30	대	99	10		남원시				
16	"	23-6	23-29	대	177	1	남원시 동충동	장*동				
17	"	23-5	23-28	대	90	4		남원시				
18	"	54-3	54-17	대	248	24		남원시				
19	"	54-15	54-18	대	36	4		남원시				
20	"	54-16	54-16	도	25	25		남원시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소재지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21	"	53-6	53-9	전	721	45		남원시				
22	"	53-1	53-7	중	939	156		남원시				
23	동충	46-3	46-10	대	274	107		남원시				
24	"	46-7	46-13	도	35	6		남원시				
25	"	46-5	46-12	대	296	32		남원시				
26	"	48-13	48-17	대	13	2	남원시 동충동	오*근 외1인				
27	"	48-4	48-16	대	265	49		남원시				
28	"	49-21	49-23	대	70	8		남원시				
29	"	49-3	49-22	대	96	14		남원시				
30	"	49	49	도	172	7	금리	손*조				
31	"	22-7	22-7	도	26	17		남원시				
32	"	22-8	22-19	도	22	13		남원시				
33	"	22-2	22-18	대	164	1		남원시				
34	"	22-12	22-20	대	76	2		남원시				
35	"	46-4	46-11	전	245	40		남원시				
36	"	47	47-1	대	413	8		남원시				
37	"	50-3	50-6	대	278	46		남원시				
38	"	50-2	50-5	대	331	5		남원시				
39	"	52-23	52-44	대	325	55		남원시				
40	"	52-11	52-43	대	355	9		남원시				
		총계			8,266	1,403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 리 명 세	성 명	주 소	
22	남원시 동충동	472, 40-3	주택	연와조 스라브지붕(지하 포함)	70.32㎡	남원시 도랑길	망 김*생				
			창고	조적조 스라브지붕	4.0㎡						
			화장실	조적조 스라브지붕	1.8㎡						
			주택	조적조 스레트지붕	6.3㎡						
			창고(2층)	판넬조 판넬지붕	14.4㎡						
			까데기	경량철골 강판지붕	4.0㎡						
			차양	PC지붕	19.2㎡						
			바닥포장		45.0㎡						
			계단		1식						
			수도간		1식						
			장독대	벽체 포함	1식						
			창고	조적조 스라브 지붕	2.1㎡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5.8㎡						
			까데기	판넬지붕	9.0㎡						
			대문		1식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3.24㎡						
						감나무		1주			
			17건								
24	남원시 동충동	23-5	주택	목조 강판지붕	67.7㎡		남원시				
			방 및 창고	목조 강판지붕	14.4㎡						
			까데기		3.08㎡						
			바닥포장		24.0㎡						
			수도간		1식						
			대문		1식						
			담장	전면	8.0m						
			담장	후면	9.0m						
			장독대		1식						
			화단		1식						
			감나무		1주						
						장미		1주			
			12건								

남원시 공고 제2021 - 197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남원의료원 의료진 숙소 증축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인 『남원의료원 의료진 숙소 증축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10월 15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의료원 의료진 숙소 증축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신설(의료진 숙소 증축) 건축연면적 2,964.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
 - 나. 주 소 :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NO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 (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합계				230,649	100,562						
1	고죽	200	대	35,015	35,015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2	고죽	200-5	천	23	23	국(건교부)					
3	고죽	299-1	임	725	149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4	고죽	623-1	천	129,084	12	국(건교부)					
5	월락	248-2	대	571	571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6	월락	252	대	35,669	35,669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7	월락	252-1	대	28,272	28,272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8	월락	252-2	대	218	218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9	월락	622-43	구	1,072	633	국(농림부)					

남원시공고 제2021 - 1998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주민 시설 이용 우대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미 이용 시 위약금을 추가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 (안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함 (안 제22조, 별표6)
-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 추가(별표 5)

○ 장애인 시설이용료 해약에 따른 환불금 명시(안 제1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0. 11. 4.(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0월 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산림녹지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dmsall619@korea.kr), fax(063-620-643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63-62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1. 개정이유

- 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주민 시설 이용 우대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미 이용 시 위약금을 추가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 (안 제14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함 (안 제22조, 별표6)
- 다.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 추가(별표 5)
- 라. 장애인 시설이용료 해약에 따른 환불금 명시(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 ~ 2021. 11. . (일) *초일 불산입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법 시행령 제10조”를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한다.(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를 “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따른 면제대상자

별표 5,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별표 5] <신 설>

시설이용 요금 감면 (제17조 관련)

감면대상	등 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국가보훈 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1인 1객실 한함 ※ 1인 1야영시설 한함
		야영시설	20%		
	4~7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8~14급	객실	20%		
		야영시설	10%		
장애인	중증 (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면제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면제대상자

[별표 6] <신 설>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리인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u>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u></p> <p>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u>법 시행령 제10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p> <p>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u>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와 같다.</u></p> <p>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u>한다.</u></p> <p>1.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관리인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후단 삭제></u></p> <p>제12조(위탁관리) ----- ----- - <u>법 시행령 제10조제1항</u> ----- ----- ----- ----- -----.</p> <p>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 - <u>별표 4</u>-----.</p> <p>② ----- ----- ----- ----- <u>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을 적용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삭제</p> <p>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u>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u></p> <p>⑥ (생략)</p> <p>제18조(예약 및 해약)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법 시행령 제9조의7 <u>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3. 삭제</p> <p><u><신설></u></p> <p>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5. ~ 8. 삭제</p> <p>9. (생략)</p>	<p>⑤ ----- ----- <u>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8조(예약 및 해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u></p> <p>제22조(입장료 면제) ① ----- ----- ----- -----.</p> <p>1. ----- <u>제2항 각 호</u> ----- -----</p> <p>4. <u>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따른 면제대상자</u></p> <p>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9.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 법령 등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2020. 6월,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또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위 8개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감면을 누락한 경우이므로 정비대상으로 함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권고 년도	관리번호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의결일자	조치기한
2018	153113	○ 국민 생활밀착형 일 팔 제도개선(2) 사회취약 계층 복지지원서비스 확 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2018.04.23.	2019.04.30.
2018	161035	○ 국민 생활밀착형 일 팔 제도개선(2) 사회취약 계층 복지지원서비스 확 대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에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	2018.10.22.	2019.06.30.
2020	214972	○ 공공시설 사용 위약 금 부담 경감방안(체육· 관광·휴양분야)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2018.10.22.	2021.06.30.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21 - 19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2. (15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1.10.14.)	이○보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828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828	주 1층 목조기와 주택 28.26㎡ 부1 1층 목조/스 레트 12.99㎡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남원시 공고 제2021-1993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남원의 우수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업무 위탁근거 규정 (안 제4조)
- 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라. 가공식품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안 제11조)
- 마.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책임 승인 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농촌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namwon604@korea.kr), fax(063-620-6770)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 (☎063-620-6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남원의 우수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업무 위탁근거 규정 (안 제4조)
- 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10조)
- 라. 가공식품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안 제11조)
- 마.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책임, 승인 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가공식품”이란 남원시 관내(이하 “시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 ②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란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 ③ “사용권”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④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⑤ “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⑥ “관리권”이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 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권, 사용자, 사용상품 및 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원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 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

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3. 그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장소·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사용신청 · 사용승인 및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

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제2조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농정국 농촌활력과 국 장 : 지방행정서기관 류홍성 과 장 : 지방농업사무관 진삼채 담 당 : 지방농업주사 이주영 작성자 : 지방농업주사 이주영					
4. 근거법령 등	- 상표법 제107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6. 규제 존속기한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신설규제》</p> <p>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의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의 필요성

-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품에 대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하고 상표사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조례를 제정하므로 규제가 신설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품에 대하여 가공식품 공동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가공식품 공동상표 운영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신청자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가공식품 공동상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비용분석과 편익분석 결과 규제로 인한 새로운 비용 발생은 없으며 규제로 인하여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편익이 압도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 신설로 인한 반대의사가 없는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있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로 사용자의 투명성이 확보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해당없음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 2021-1997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 신설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5조)
- 나. 오·폐수의 유입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제15조)
- 다. 부담금의 부담에 관하여 규정 (안 제16조~제28조)
- 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 (안 제29조~제35조)
- 마. 사업자 대표회에 관하여 규정 (안 제36조~제3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4. ~ 2021. 11. 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기업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전화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 신설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오·폐수의 유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15조)
- 다. 부담금의 부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제28조)
- 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제35조)
- 마. 사업자 대표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6조~제3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4. ~ 2021. 11. 3.(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에 따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맡아 처리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오·폐수의 유입

제6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시설 설계용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 시킬 때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배수시설의 개수·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장)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을 준용한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장치 부착은 스크린,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인기관에 재교정이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TU)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나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차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의 부담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보수 소요경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③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부과 대상자의 납부의무 중단에 관하여는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료의 추정)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여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

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담)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4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등의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26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25조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새 장비 또는 새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사무를 위탁한 경우 운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 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9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부담금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의 제출명령)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

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4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운영자 포함)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장 사업자 대표회

제36조(설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를 둔다.

제37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회는 사업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대표회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38조(기능) 대표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규정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9조(의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 AS = (P \times R) \times \frac{BLi}{BLs}$$

- AS : 입주 사업자 설치부담금
 - P : 처리시설 설치비 =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대상 사업비
 -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 BLi : 오·폐수배출사업자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 (BOD + COD + SS) × 유량
 - BLs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 (BOD + COD + SS) × 처리용량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1)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담기준 :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나. 산출근거

$$* CS = 0.5M \left(\frac{QI}{QT} + \frac{QOI}{QOT} \right) \times Z$$

· CS : 사업자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관로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COD}{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COD}{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Z : 조정계수 = (오 · 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2) 폐수관로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 폐수관로 사용료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 ·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에 적용한다.

나. 폐수관로 사용료 산정 방법

$$\text{m}^3\text{당 사용료} = (M2 + M3) / \text{폐수유입량}$$

- $M2$ (시설재투자적립금) : 오 · 폐수관로의 재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 연간 시설재투자적립금 $M2 = E_i \times F_i \times 12\text{개월}$

- E_i : 오 · 폐수관로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_i : 10/10,000

- $M3$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 ·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폐수유입량 : 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되는 오 · 폐수량($\text{m}^3/\text{년}$)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 · 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text{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times 0.8(\text{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 ℓ/일(기숙사 인원은 200 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관리자의 관리·감독으로 공인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폐수오염농도의 하한 기준선은 사업장의 오수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mg/ℓ (기숙사, 주거지역은 200mg/ℓ)
 COD 100mg/ℓ (기숙사, 주거지역은 200mg/ℓ)
 SS 100mg/ℓ (기숙사, 주거지역은 200mg/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3]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 BS = (F \times R) \times 0.5 \left(\frac{QI}{QT} + \frac{QOI}{QOT} \right) \times Z$$

- BS : 사업자별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액
-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COD}{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COD}{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F = \text{총 공사금액} \times 10 / 10,000$$

- 총 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별지 제2호서식]

관 리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제6조제2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제10조 관련)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제20조 및 제26조 등 관련)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계							계			계		
납부기간							납부기간			납부기간		
납부기관							납부기관			납부기관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부담근거 (단위:mg/l)							영수일자		년 월 일	영수일자		년 월 일
유 량	BOD	TOC	SS	T-N	T-P							
m ³ /일												
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		

붙임 1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

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2., 2011. 4. 2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1. 4. 28., 2015. 2. 3., 2017. 1. 17., 2021. 4. 13.>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1.>]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함

○ 관련조문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530,000천원

- 인건비 : 232,891천원
- 경비 등 : 297,109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천 원)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비용	2,65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인건비	1,164,455	232,891	232,891	232,891	232,891	232,891
경비 등	1,485,545	297,109	297,109	297,109	297,109	297,109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과 장 : 지방공업사무관 류 창 담 당 : 지방시설주사 박봉용 작성자 : 지방행정서기보 이세현					
4. 근거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8조, 「하수도법」 제3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등					
6. 규제 존속기한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신설규제》</p> <p>제6조(오·폐수의 유입처리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 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 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 시킬 때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 에게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 용할 수 없다.</p> <p>⑧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 는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p> <p>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p>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시설의 부대시설로 본다.
8.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 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mg/L 이상인 사업자(장)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장)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

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장치 부착은 스크린, 제8조제5호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보수 소요경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공폐수 처리구역 내 사업자
-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한다.

- 1. 1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③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담)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 제25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②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 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제29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30조(부담금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35조(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운영자 포함)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므로 규제가 신설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설비 등의 설치·관리 규정 및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배출원인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므로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실현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 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은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여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자들이 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규제 신설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편익이 크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있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물환경보전법」 등에 근거를 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익산시·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타 지자체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임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업체 위탁 비용: 530백만 원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해당없음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1 - 1999호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부서장의 신고의무(안 제6조)
- 라.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안 제7조)
- 마.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 바.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064), 팩스(063-620-6704), 이메일(lsm8032@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부서장의 신고의무(안 제6조)
- 라.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안 제7조)
- 마.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안 제8조 ~ 제10조)
- 바.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11조)
- 사. 공무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5 . ~ 2021. 11. 4.(20일간) *초일 불산입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원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남원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2.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3. 허위민원의 반복제기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

- 4. 성희롱·폭언·협박·폭행·기물파손·신체적 상해·점거·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
- 5. 여러 차례 담당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 행위를 방해하거나 일반사회 관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민원
- 6. 민원인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유발하는 민원
- 7. 비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거나 민원처리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는 민원
- 8.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특이민원 주관 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특이민원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의무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사무실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및 문구 게시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 예산, 감사, 특이민원 총괄, 민원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남원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임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이민원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11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며,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기준 (제7조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및 의료비	제7조제1호및제2호	50만원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3. 입원비, 치료비 4. 심리상담 비용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3호	4시간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형사고발 손해배상소송 등	제7조제4호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7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제7조제6호	5일 이내	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7조제7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11조	예산의 범위 내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발 생 일		부서명	
피해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성별:)	연락처	
민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호 :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2호 : 의료비(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input type="checkbox"/> 3호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input type="checkbox"/> 4호 : 법률상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등 <input type="checkbox"/> 5호 :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input type="checkbox"/> 6호 :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1 - 2002호

「남원시 이·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이·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임의 횟수 제한 규정 신설로 이·통장 장기재직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임의 횟수 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나. 직무정지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064), 팩스(063-620-6704), 이메일(lsm8032@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이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연임의 횟수 제한 규정 신설로 이·통장 장기재직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임의 횟수 제한 조항 등 신설(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4항)

나. 직무정지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이·통장은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 이외 접수자가 없는 경우,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읍·면·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이·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통장 임명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선출되어 임명이 예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통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임기) ① (생략)</p> <p>②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u>한다</u>.</p> <p>③ (생략)</p> <p><u><신설></u></p>	<p>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하되, 이·통장은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 이외 접수자가 없는 경우, 연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u>.</p>
<p>제9조(해임) (생략)</p> <p><u><신설></u></p>	<p>제9조(해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읍·면·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이·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u>.</p>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규칙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아·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1 - 2003호

「남원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되는데 아바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2조, 제6조)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중고대학생
- 지급액 : 분기별 공납금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나. 중복지급의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신설(안 제2조)

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 기준 : 재직기간 우선 고려 → 이·통장 경력 + 학업성적 + 상훈

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구체적 규정(안 제8조)

- (현재) 자격상실, 휴학·퇴학 등 → (개정)자격상실, 휴학·퇴학,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중복지급 시 등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064), 팩스(063-620-6704), 이메일(lsm8032@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 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안 제2조, 제6조)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중·고·대학생
 - 지급액 : 분기별 공납금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나. 중복지급의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신설(안 제2조)
- 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 기준 : 재직기간 우선 고려 → 이·통장 경력 + 학업성적 + 상훈
- 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구체적 규정(안 제8조)
- (현재) 자격상실, 휴학퇴학 등 → (개정)자격상실, 휴학퇴학,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중복지급 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 2021. 1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이·통장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훈향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통장의 자녀, 이·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1인당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때 교육과정별이라 함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 부모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 3. 해당 학교장 및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
- 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제4조 관련)**1. 총점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통장 경력	이·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고등 학생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대학생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이·통장 경력

근속연수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비 고
점 수	40	30	20	10	20

※ 경력 산정 기준일 :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 읍면동 통보문상 현재

다. 이·통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발생분
- 관련조문 :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장학금 소요분
 - 중 학 생 : 20명 × 200,000원 = 4,000,000원
 - 고등학생 : 12명 × 500,000원 = 6,000,000원
 - 대 학 생 : 40명 × 1,000,000원 = 40,000,000원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합계
세출	장학금및학자금	50	30	30	30	30	170

※ 교육과정별 1회 지급 제한 규정으로 연차별 예산 소요액 감소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170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없음
-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지방세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의존재원							
세 출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인건비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재원 조달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지방세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